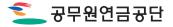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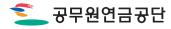
##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GEPS ANNUAL REPORT** 



##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GEPS ANNUAL REPORT



## 목 차

CEO 메시지	04
공단의 전략체계	05
한눈에 보는 공무원연금(2022)	06
2022년 주요성과	80

## 1. 공무원연금 및 재해보상제도

1-1 제도개요	18
1-2 발전과정	20
1-3 재정전망	26
1-4 운영구조	27

### 2. 공무원연금공단

2-1 공단개요	30
2-2 사업구조	31
2-3 주요사업	32



### 3. 공무원연금기금

O OTELENIE	
3-1 기금개요	40
3-2 운용성과	47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54
4-1 손익계산서	58
5. 주요통계	64



### CEO 메시지



이번에 발간하는 「2022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는 공무원연금제도와 이를 관리·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업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단에서는 연금제도 운영과 재해보상서비스, 기금운용 및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2년 공단이 창단된 후 어느덧 4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단 당시 2천명 수준이던 연금수급자는 2022년말 기준 약 60만명으로, 재직 공무원은 67만명에서 128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또한 전략적 자산 배분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효율적 운용을 통해 기금규모가 5,490억원에서 1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업과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은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연금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연금제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면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단의 전략체계

미셔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회공헌**을 돕는다

비전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핵심가치







전문성

경영방침

소통과 공감의 조직혁신

전문성 지향 인재경영

국민눈높이 윤리경영

고객중심 적극행정

###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 건실한 연금운영

- ·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 고객중심 연금서비스 제공
- · 금융자산 수익 증대

###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 · 고객체감 맞춤서비스 확대
  - · 공유복지서비스 활성화
    - · 포용적 재해보상 강화

###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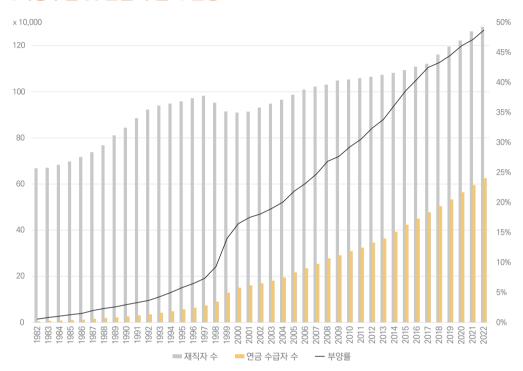
- · 안전·환경 경영 정착
- · 주요사업 사회적 책임 강화
-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생협력

### 국민이 신뢰하는 혁신

- · ESG기반 경영시스템 및 윤리경영 실천 강화
  - · 조직혁신 및 전문역량 강화
    - ·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

### 한눈에 보는 공무원연금(2022)

### 재직공무원 및 연금 수급자 현황



### 퇴직급여 (정부+공무원 공동부담) 수지구조 (단위 : 억원) 개인기여금 + 정부부담금 135.914 정부추가부담금(보전금) 44,451 수입 지출 1,319 연금이체부담금 등 퇴직연금 176,679 퇴직일시금 등 5,005 퇴직수당 (정부부담) 재해보상급여 (정부부담) 27,130 27,130 1,924 565 1,359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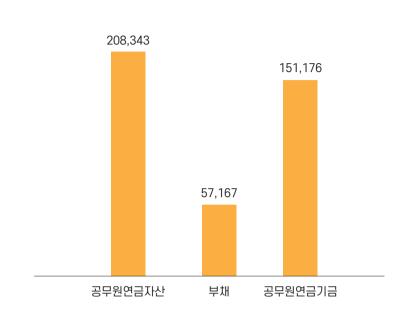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등

퇴직수당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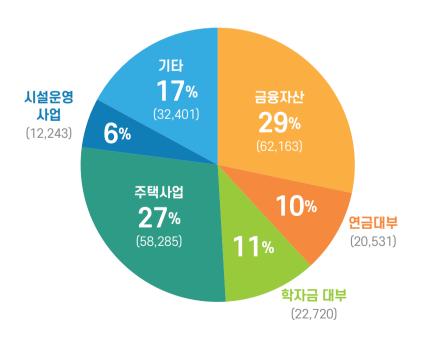


(단위 : 억원)



### 자산구성

(단위 : 억원)



### 2022년 주요성과

### CEO 취임 2년차 경영계약 과제 강화. 창단 40주년 미래상 정립 및 신규사업 발굴

### ▶ CEO 취임 2년차. 도약을 위한 경영계약실적 자율 점검으로 성과지표 신설 및 상향 조정

경영전략(과제)연계	CEO 경영계약	추가 지표	'22년 목표	'23년 목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정립	연금정책 연구기능 강화	연구성과지수 (연구노력·전문가평가 포인트)	26p	29p
재해보상 기능 강화	선제적 서비스 혁신	요양기간 연장심사 신속성	17.195일	13.755일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 혁신	공단 혁신계획 추진	혁신계획 이행도	혁신계획 수립, 이행	연도별 100%

상향 조성 성과지표	당초	변경	목표상향 근거 및 도전성
급여적기지급률	92.00%	96.00%	· 종전 목표 대비(2ơ) 4.0%p 추가 상향
기여금 적기 징수 노력도	92.30%	99.10%	· 종전 목표 대비(2ơ) 6.8%p 추가 상향
재해입증지원율	28.80%	45.10%	· 종전 목표 대비(2ơ) 16.3%p 추가 상향
퇴직자 단체보험가입자수(누적)	8.5천명	11천명	· 당초 목표 대비 2.5천명 추가 상향

성과	달성률
96.70%	100.70%
99.40%	100.30%
45.10%	100%
 11천명	100%

### ▷ 창단 40주년 사업별 미래상 최초 정립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선정

연금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前) 정확한 연금지급	(前) 사후적 보상중심	(前) 제한적 단발성 복지		
HOW BUILD				

### 사업별 미래상

지속가능한 제도운영 및 디지털 연금서비스 공무상 재해 올커버(All-Cover) 다양성 기반 개인 맞춤형 종합복지
---

### 미래 지행점

### 연금·재해·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기획·사업운영 전문기관

### · 미래방향성에 기반한 신규사업 발굴 시사점 및 필요 경쟁력 도출

구분	미래 지향점	신규사업 발굴 시사점		[
연금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정립	· 연금·재해보상·복지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연구
사업	· 디지털 연금서비스 선도	· 연금데이터를 활용한 노후설계 등 고객경험 확대		· 컨설
재해	· 재해예방서비스 발굴·확대	· 재해예방, 보상, 사후관리의 선순환 사업모델 확립	>	· 데(
보상	· 맞춤형 요양케어 활성화	· 의료기관과 데이터 및 인프라 연계 등 협력사업 확대		· 인 <u>프</u>
복지	· 민간협력 기반 복지 다양화	·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민간협력 고령친화서비스 확대	_	· 실:
사업	· 공무원 개인 맞춤형 복지	· 고령화·소득공백 대비 공직 전문성 활용 평생학습 제공		· 공?

미래경쟁력	
· 연구전문성 · 컨설팅 역량	
· 데이터 분석 · 인프라 협력	
· 실버서비스 · 공직 전문교육	

### · 사업기능 점검과 미래 방향성, 시너지 평가 등을 통한 신규사업 선정 및 미래 경쟁력 확보

기존 선정사업 점검 (기능폐지 및 완료사업 제외)

신규사업 발굴·정비 (신규사업 POOL 46개 도출)

최종선정(5개) (미래 방향성, 시너지 평가)

추친계획 수립 (추진 로드맵 수립)

### 신규사업 발굴

- 연금·재해보상·복지사업 정책연구 → 목표 공무원 연금재해복지연구원 설립
- 종합 재무설계 플랫폼 서비스 → 목표 맞춤형 노후설계 컨설팅으로 확대
- 공무원 재해예방·요양케어 사업 → 목표 공무원 복합치유센터 운영
- 퇴직공무원 맞춤형 실버서비스 → 목표 공단 브랜드 상품·서비스 출시
- 퇴직공무원 전문교육 제공 → 목표 퇴직공무원 전문교육원 설립

신규사업 발굴 → 경영전략 수용도 91.6점(4.2점 † )

사업별 미래상 정립.

### 차별화된 혁신전략 수립으로 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경영 효율화 성과 창출

### ▷ 경영환경 변화와 혁신수요 및 경영진단을 반영한 GEPS풲 혁신전략체계 수립·운영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신뢰 확보 및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현신목표 디지털 혁신 경영효율화 ESG경영 확산 조직문화 혁신 혁신 전략 혁신과제 • 디지털기반 업무혁신 • 조직·인력·기능 합리화 • 탄소중립·친환경 생태계 • 일의 가치 높이기 (12개) • 데이터 근거 행정혁신 • 재무구조 개선 •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사람중심 사회적가치 경영 실행과제(40개) • 고객중심 서비스혁신 • 방만경영 요소 개선 • 국민 공감 투명공정 경영 • 조직·개인이 함께 성장 • 조직문화진단 지수 • 직원 디지털 역량지수 • 혁신계획 이행도 •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성과지표 • 데이터 품질 지수 (조직, 예산, 자산매각)

- GEPS-ESG 지수
- 혁신지수

추진체계

- 디지털보드(28명)
- 디지털혁신자문단(외부5명)
- 경영혁신T/F(21명) • 경영혁신자문단(외부10명)
- ESG리더(21명) • ESG경영자문단(내외부16명)
- 체인지어벤져스(30명) 체인지리더(10명)
- 차별화된 혁신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혁신성과 인센티브(특별승진, 인사·성과평가 1단계↑등)로 혁신동력 마련

### 🔼 [[지틀]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으로 [[지털 전환 및 혁신 인프라 마련

'20.4월 ~ '21.12월	'22.1월 ~ 7월	'22.8월 ~ '22.12월
분석 十 설계	프로그램 구현	테스트·결함조치 + 서비스 개시(11.28.) + 안정화
개선요구 1,475건 화면·DB설계	연인원 18백명, 18,584FP 개발	21,973건 테스트, 5,707건 보완
업무효율성 향상	RPA, OCR 등을 통한 자동심사 확대, 고지정산 자동화, 통화내용 디지털 DB화	
서비스 혁신	지능형 자동응답시스템, 공두	무원 건강상태 진단 서비스, 멀티브라우저 지원 등
인프라 강화	G-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구	

· OCR 문서판독 20종, RPA 11종 적용 등 자동화 † · 지능형 시스템과 인사급여정보 연계로 업무효율 20% 1

홈페이지 개선 및 모바일 서비스 강화로 고객접근성↑ · 신속한 장애복구 및 제도변경 반영 등 인프라 강화

### □지털 기반의 고객소통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_	
'GEPS 연금타운' (메타버스) 빅데이터	(홍보관) 공단 소개, 유튜브영상, 연금지, 단체보험 게재(7월 이후 1만명 접속)		• 메타버∠ 96.9점
	(간담회) 부담금 담당자 간담회, 공상공무원 심리상담·설명회 등(6회)		- '22 S
	(건강상담) 경희의료원 협업 건강상담 운영, 신입직원 메타버스 체험 등	>	(공공 유 • 제휴복)
	(제휴서비스) 생애주기별, 계절별 인기상품 등 분석 및 입점 확대 반영		(전년대
활용	(신용정보기관 협업) 기여금 성실납부 공무원 신용등급 상향 효과(18만명)	-	• 마이데() 우수상 :

- 스 심리상담 만족도
- SNS 최우수상 유튜브부문)
- 지매출 1.6조 HUI 4.9% ↑)
- 이터 활용 경진 수상

### ▶ 경영효율화 지속적인 효율성 제고와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인력운영 혁신 추진

복지본부 부서 통합(3실 → 2실, 은퇴지원실 폐지) 및 비서실 폐지  조직 슬림화 지부 4개 부서(3지부 1콜센터) 폐지·통합으로 관리인력 감축 - ''22년 10지부 1콜센터 → ''23년 9지부 → ''24년 7지부		
기능 조정	은퇴자공동체마을, 국제개발협력 등 타 기관 중복사업 이관 및 폐지	
핵심사업 강화	미래 성장사업(재해보상, 연금연구) 및 재해입증지원 현장조사 인력 강화	

• 경영효율화로 미래 경쟁력 확보 (정원 17명 감축, 자산 2,582억원 매각)

### 경영 | 3 과미 | 3

### ESG경영·윤리·안전 및 지역발전 도모 등 사회적 책임의 적극 이행

### ▶ ESG경영 취임 2년차, 도약을 위한 경영계약실적 자율 점검으로 성과지표 신설 및 상향 조정

구분	ESG 중장기 방향		
환경 E	GEPS Green 2050년 넷제로 목표로 2030년까지 30·30 온실가스배출량 30% 감축		
사회 S	GEPS SV(Social 은퇴공무원 사회공헌 차별적 경쟁 Value) 성과창출 우위 확보		
지배구조 G	ESG 투자 확대	ESG 투자 기반 조성, 이해관계자의 ESG 투자참여 유도 및 확산	

학심과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동반·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활성화
 ESG 투자확대 및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11년 연속)ISO 14001
- 환경경영 인증 • ESG투자 :
- \* ESG투사 : <sup>'21년</sup> 7.8% → 22.5%

### ▶ ESG경영 윤리규범 신설 강화 및 자체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등 윤리경영 강화

· 윤리규범 신설·강화로 윤리경영 실행력 및 내부통제 강화

이해충돌방지지침	임직원행동강령	부동산취득제한지침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 이해충돌방지담당 지정	• 계약시 거래업체에 퇴직자	• 타인명의 부동산 취득제한	<ul><li> 개인메일 사용제한 강화</li><li> 재취업기관 1년간 거래 제한</li><li> 퇴직자 재취업 여부 점검 확대</li></ul>
• 신고·제한행위 절차 규정	확인의무 및 퇴직자 취업경위	• 신규취득제한부서 명확화	
• 위반사 조사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 신설	• 징계양정기준 신설	

### · 자체 내부청렴도 진단결과 분석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추진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방향	추진내용	
상급자 리더십		내부소통 활성화	부족역량 맞춤형 교육, 동호회·팀빌딩 등 세대간 소통 활성화	_
불공정업무지시	+	공정성 제고	직무성과계약제(1,2급), 공정평가 방해행위자 패널티, 다면평가 확대	_
예산진행투명성		예산집행 개선	발주자-검수자 분리, 상품권 시스템 관리, 외상·사적거래 신고제 도입	_

-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 자체 인권영향평가 4년 연속 1등급

### ▶ ESG경영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근무환경별 맞춤형 산재 예방조치로 중대재해 ZERO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 안전점검 등 시설물안전관리지침 제정
- 24개 시설물 622개 지표 분기별 관리
- 시설안전자문단 25개 시설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 안전점검, 관리수준 등 적정성 평가

### 근무환경별 위험요소 조치

(사무직) 보조기구지원 48명 (콜센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직무스트레스 집중관리 (수급업체) 근로자보호제도 이행, 직무스트레스관리 (캐디) 사고사례 공유, 안전캠페인

- 시설사업장 중대 재해 ZERO
- 수급업체(시설관리) 근로자 산재 50% ↓
- 자회사 최초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 **ESG경영** 지역현안 선도적 해결과 혁신제품의 파격적 구매로 지역발전 도모

제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33개 기관) 및 CEO(공통위원장) 지역문제 해결 주도(4개 과제)

우유팩 수거체계 구축 세대 서로돌봄 프로젝트 창업청년 통합 네트워크 구축 민관 공동 환경캠페인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문제해결 콘텐츠 '대상' 수상(어린이집)

### 이전기관 최초 제주 칭찬프로젝트 '착하단' 선정

혁신제품 구매 전년대비 180% ↑ (4억원 → 11.2억원), 수수료면제로 제휴쇼핑몰 입점기업 92% ↑ (전년 12 → 23개)

### 노사가 함께 하는 조직문화 혁신과 숙 직원 직무급 도입 합의

### 조직문화 노사가 함께! 존중과 공감. 배려의 조직문화 혁신

### 추진목표

###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존중·공감·배려의 조직문화 기반 조성

추진전략

11 가치 Together (일의 가치 높이기)

2 해피 Together (행복한 직장만들기)

3 성장 Together (조직과 개인의 균형성장)

전략과제

- 일하는 방식 개선
-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 등
- 의식 및 관행 개선
- 공정한 인사, 역량개발 지원 • 마음건강·직무웰빙 등

- (9개)
- 일 버리기 과제 발굴 • 적극행정 문화 내재화
- G-5 에티켓 캠페인. 하이브리드형 근무제도, 공간혁신

• 수평적 조직문화와 워라밸 등

- 제대로 쉬는 휴가문화
- 일 버리기 과제 발굴
- 건강한 직장 만들기

세부내용

실행과제

(25개)

노사공동 협업 마음건강 증진활동 추진

전문기관 도움 서귀포보건소 지원

사내자원 활용 직원재능기부, 사내 동호회

(신체건강) 건강검진, 금연유도, 월 21만보 걷기 (마음건강) 마음건강지킴이, 쓰담쓰담 힐링캠프 (문화조성) 동호회 활성화, 원데이취미클래스 등

추진체계

- 세대공감 조직문화혁신추진단, 시민참여혁신단, 모니터링(혁신전략회의, GEPS청원제 등)
- · 「건강한 직장만들기」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우수사례 수상 · '22년 신입직원 퇴사율 ZERO
- · 조직문화진단지수 86.1점(전년대비 1.5점↑)
- · 워라벨지수 : 88.2점(전녀대비 1.8점 † )

### 🔼 🕳 조직문화 🖿 적극행정 내재화 및 문화 확산으로 급여 수급권 등 적극적인 고객권리 보호

### (추진제계 개선) 적극행정 내부규정 제정 (적극행정위원회 4회) 외부인원 확대(2명 ↑), 위원장 외부 선임 적극행정 →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등을 통한 의사결정 반영(7건) 내재화 (적극행정 문화) 공모전으로 우수직원·사례 공유, 성과평가 반영 기금재정 1 심판청구 인용사례 참고. 주택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환급 추진 사망시 장애자녀 미등록자도 유족으로 인정(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 고객권리 보호 군인연금 재직기간 합산자 해당연금 비제한(인사처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포상 - 우수직원 2인 평점 1등급 ↑
- (공모) 내부 59건, 외부 28건
- 조세불복으로 67억원 환급
- 사망 이후 장애 인정 ('22년 3건) 등 고객관리 적극 보호
- 적극행정활성화지수 77.5점 (전년대비 10.5점 ↑)

###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비간부직 직무급 도입 극적 합의('22. 12월) ▶ 직무급

'21년 전 직원 설명회 등 직무급 제도 공유, 보수체계 개편 「노사공동T/F」 운영 합의

- 보수 개선 : 간부직 직무성과계약제, 임원 해임시 퇴직금 감액, 신입직원 보수개선 등
- 「노사공동T/F」 구성·운영을 통해 직무급 도입만 보완·개선(6~11월)
- 3급과 4급 이하를 독립 평가, 특정부서에 편중없는 객관적 직무등급 결정 등
- 3차에 걸친 노사협상 불발 위기를 극복하고 극적 노사합의 완료('22. 12. 27.)

'22년

협상 결렬(위기)	극복 노력
① 노조 집행부 탄핵으로 노사공동T/F 백지화	노사 신뢰회복으로 T/F 운영(6월)
② 직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노사공동T/F 합의 불발	전 직원 설명회 등 오해 해소
③ 민주노총에서 직무급 합의시 제명 등 조치통보	이사장과 집행부 직접 대화

'23년 • '23년 상반기 중 「노사공동T/F」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비간부직 직무급 전면 시행

- 정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100% 이행
- 하부상박형 임금인상으로 연공성 완화
- 전 직원 직무급 도입 노사합의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화
- 보수체계 수용도 84.6점 (전년대비 1.8점 ↑)



## 주요 | 1

### 가입자관리 연금개혁 대비 선제적 준비와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 1 연구프로세스 강화를 통한 연금개혁 준비태새 완료!
- ▶ 정책목표별 우선선위 분석을 통한 연금개혁 최적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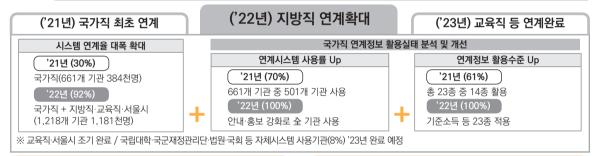
### 공적연금 평가지표 개발 개혁대안 유형화 최적 개혁대안 제시 • 개혁대안 평가지표(계량) 개발 - 재정건전성/급여적성성/제도형평성 • 해외사례·전문가 제시안 종합검토 - 구조·모수개혁 등 4가지 대안 정립 • 연금개혁 시 대안 도출 기반 마련 - 정책목표별 대안의 우선순위 분석

### 🔼 재정추계 분석시스템 고도화로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적기제공 기반 마련

복합모형 구축	기존 모수개혁 → 개선 모수·구조개혁에 모두 적용, 추계모형 모듈화로 수정 용이
산정·검증시스템 개선	기존 전문 코딩, 전용DB로 결과 확인 → 개선 실행조건 선택 방식, 결과 바로 확인
분석보고서 시스템화	기존) 분산된 추계결과 취합·수기작성 → 개선 표준보고서 설계 및 자동 출력 시스템

국내 최초 공적연금제도 정량 평가지표 개발로 연금개혁 추진시 합리적 논의·대안 도출기반 마련 재정추계 분석시스템 자동화로 다양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분석 결과 적시 제공

### 공무원 인사급여시스템 연계 확대 및 활용율 제고로 업무효율 획기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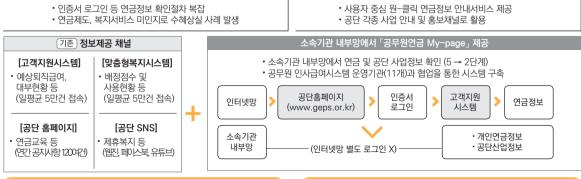
기여금 과·미납처리 업무효율 20%↑ (과미납 발생건수 <sup>'21년</sup> 4,240건 → <sup>'22년</sup> 3,400건)

문제인식 연금정보 취득의 편의성 제고 필요

재직사실 조회 업무량 33% 감소 (<sup>'21년</sup> 191건 → <sup>'22년</sup> 128건)

추진방향 접근은 손쉽게! 정보는 풍성하게!

3 원클릭으로 내 연금정보를 한눈에! 「공무원연금 My-Page」제공



국가직 326개 기관 22만명 대상 누적 1.975만건의 정보 제공(8월~) 연금정보 확인절차 간소화로 연금·복지서비스 수혜상실 예방 기대

## 주요 | 2

### 급여관리 디지털 신기술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서비스 효율성 제고

- 를록체인 및 생체인증 新기술을 활용, 모바일 신원확인 플랫폼 구축
- ▶ 정확한 연금지급 및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털 新기술 도입

### 모바일 신고

- 오프라인 신고 모바일 앱 신고
- 기존 인감증명서, 재외공관확인서 등 발급, 우편 발송
- 개선 모바일 통한 안면·음성 정보 제출로 편의성 향상

### (디지털) 생체인증 신원확인

- 디지털 新기술 활용한 본인 확인
- 기존 생존확인 어려워 부정수급 발생 가능
- 개선 DID, 생체(안면·음성) 인증으로 부정수급 ZERO

### 투명·신속한 행정

- 실시간 서비스로 기간 단축
- 기존 대상자 선정, 증빙자료 확인 등 민원 발생
- 개선 블록체인 이력관리로 신속·투명성 확보
- ▶ 정부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최종사업자 선정('22,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 최종 선정(13억원 비용 절감) 오프라인 방식 탈피, 디지털 대전환으로 신상조사 업무처리일수 78.6%(14일→3일) 단축 기대

- 2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로 고객 편의성 제고
- ▶ 정부(행정안전부)와 공단 간 시스템 연계로 협업체계 마련

(고객) 동의절차	(API) 문서 송수신	(공단) 업무처리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문서 요청(묶음정보) / 수취(PDS 저장)	· 자료 조회 / 업무프로세스 개선

### □ 마이데이터 통한 활용 자료 단계적 확대

구분	종류	서비스명
[시범] 1단계 ('22년)	① 연금수급자 신상신고 서비스 ② 연금정지 해지·조정 신청 서비스	·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등 6종 · 소득금액증명원 등 3종
[확대] 2단계 ('23~24년)	① 퇴직유족연금승계신청 서비스 ② 연금소득연말정산 서비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 6종 · 퇴직연금수급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2종 · 행정정보 연계 결과분석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서류발급 관련 고객수수료 부담 3,400만원 절감, 신상조사업무 처리절차 33%(6→4단계)단축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22.12월)

3 보험료 징수에서 급여 지급까지「One-Stop 통합심사체계」 도입

문제인식

- 제도 적용자(재직자·퇴직자) 지속 증가로 직원 1인당 관리업무량 비례 증가
- 업무처리 신속성 저하 및 징수 급여 혼합민원 응대 곤란
- ▶ One-Stop 통합심사체계 도입, 종합적인 고객응대 중심 프로세스로 전환

### ~'21년까지(별도부서)

• 부서별 업무기능 이원화 - (고객) 징수 급여 개별 문의

### '22년 상반기(부서통합)

재·퇴직자 증가로 업무량 가중분야별 개별 고객상담, 불편초래 여전

### '22년 하반기 ~ '23년(심사통합)

- 담당자별 징수·급여 원스톱 처리고객중심 응대체제로 전환
- ▷ 징수·급여입무 통합처리를 위한 종합 역량 강화 추진(내부통제 ↑, 직무교육 27회, 매뉴얼 현행화 등)

공급자 중심 프로세스에서 고객중심 연금서비스로 민원 편의 및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상담 단일화로 업무량(전화량 10.7%↓) 감소 및 담당자 업무역량 향상 (→2급 1명 전환배치) 주요 3

패해보상 민간협력을 통한 공직 안전망 구축과 포용적 서비스 혁신!

1 재해예방 법령체계 최초 마련! 공직안전망 구축 거버넌스 모델 제시!

추진배경 경찰, 소방 등 예방 관련 법령간 체계가 상이 불명확하여 종합적 추진체계의 근거 마련 필요

• 과제 공모단계부터 전문기관 및 전문가간 의사소통, 사업설명 및 대안제시로 재원 마련 등 근거규정 반영

 과제 제안 및 선정
 체계마련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확 정

 공단제안 →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원 주관, 공단 지원
 방향설정 → 정책, 법률검토
 입법상정(인사혁신처 협업)

→ (법령체계안) 국가·지차제 책무, 안전보건 규정 등 18개 조문 신설·개정 등 제안

정책집행기관(공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제연구원) 간 협업으로 입법방안 마련 최초 사례

"예방·재활 지원사업(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10종)" 공단 위탁 시행령 개정('23, 6월 시행)

공직사회의 아픈 마음 진단부터 치유까지 다스리다!

추진배경 과로성 질환 등 공직사회 정신적 재해 증가에 따라 정신질환 위험요인 예방 필요성 증대

자가진단 참여율 2배 상승 8,826명 2.2배 † 19,547명 상반기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지표에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율」 반영, 기관관심 제고

3 소방관 유해환경 노출로 공무상 재해? 공단이 분석 입증 지원!

추진배경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업무환경 분석으로 유해·위험환경 노출 심의 반영으로 심의 반영으로 신속한 공상 결정

 직업환경의학회
 업무 관련성
 • 소방 전문조사사건(48건)의 70%, 악성종양(24건)의 80% 업무관련성 인정

 전문조사
 업무유해환경
 • 화재진압과정에서 벤젠·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노출 및 인체축적 등

 공무상질병 추정
 • 전문조사 분석을토대로 폐암 등5종 직업성 암으로 재해 추정 건의

유해·위험한 환경 노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도입(23. 6. 11. 시행)



요양기간 연장심사 업무혁신으로 결정의 신속성 및 수용성 제고 ※ 22년 고객관점 적극행정

추진배경 모든 상병 의학자문(1인)으로 결정에 장기 소요. 불복청구 증가 → 신속성, 수용성 제고 필요

● 상병별 최소(표준) 요양기간 설정: 의학자문 생략가능한 표준 심의기간 마련·운영

기간연장 데이터 분석 💙 재심결정사례 분석 💙 전문의 의견수렴, 적정성 검토 💙 골절(6월) 등 최소요양기간 마련

● 자문의사협의회 도입: 정신질환 대상 진료의 및 자문의가 이견시 전문의 3인으로 구성, 심의결정



4





## 주요 사업

### 복지사업 시설 안전과 개포9단지 완공. 촘촘한 은퇴자보험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 안전·친환경 최우선 복지시설 운영으로 중대재해 ZERO

### 친화경 녹색경영

- (사업장 탄소중립) 태양광(420kWh). 전기차충전소(40개소) 설치
- (건설현장 탄소중립) 지열에너지 활용. 방음벽 대체 완충조경

### 시설사업장 안전경영

- (재해예고 및 관리자동화) 영상 분석, 중앙통제. 낙뢰예고시스템
- (사업장 안전체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립

### 중대재해 없는 건설현장

- (스마트안전) IoT. CCTV. 드론활용 사각지대 해소
- (근로자중심) 사전작업 허가제. 비상통로 등 보강

### 사업장 에너지 자립률 상승 <sup>'21</sup>0.6% → <sup>'22</sup>4.9%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획득

자회사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 안전 작동성평가 2단계 상향(D→B등급)

### 개포 9단지 재건축 성공적 완공 및 공공임대 법적자격 명확화로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

### ▶ 중대재해 1건 없이 서울 도심 대규모 재건축(개포9단지) 성공적 완공

### 애로사항

(인허가 애로) 사용검사 주체 이건 (민원) 인근학교 소음, 환경문제 제기 (공사지연) 화물노조파업, 자재수급 위기 (녹색건축) 친환경, 녹색건축 요구

### 극복노력

- · 관련법 근거 제시 등 지자체 협의
- · 저소음, 환경정화 등 민원 해소
- · 직구매, 고강도 대체자재 적용
-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설비 반영 등
- 공사 지연 없이 준공
- 1,829 세대 주거지원
-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 건축 인증(최우수 등급)

### 🔼 공무원 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에 포함하여 정부 중점 정책사업 참여 기반 마련

공공주택 운영 한계	<ul> <li>주택소유여부 등 정보취득근거 부재, 임대차계약 신고, 갱신청구권 적용 혼란</li> </ul>	
정부부처 협의 노력	• 국가를 대신한 임대주택 운영, 저렴한 임대보증금 등 공공성 및 정책사업 연계성 설득	>
관련법령 개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상 통합공공임대유형에 공무원 임대주택 추가(5.27.), 공단 내규 등 국토부 승인(9.20.)	

- 공공임대 법적지위 확도로 고덕8단지 공공복합사업 참여
- 공공·민간임대기준 혼용문제 해소
- 임대보증금 현실화를 통한 임대주택 운영 지속성 제고

### 보험료 징수에서 급여 지급까지 「One-Stop 통합심사체계」도입

### 문제인식

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보험가입 공백기간 발생. 뒤늦게 단체보험 가입 요청 사례 빈번

애로사항	해결방안/개선노력
가입공백 해소	• (종전) 연금개시 2개월 이내 → (개선) 퇴직 후 2개월 이내 ※ 미도래자도 가입자격 부여
가입 기회 제공	<ul> <li>보험사를 적극 설득, 미가입 은퇴공무원에게 가입기회 제공</li> <li>미가입자에 대한 홍보 강화(2,585명 가입)</li> <li>퇴직급여 청구시 문자발송 등 가입 안내 시스템 구축</li> </ul>
고객중심 제도개선	• 재취업시 일시중지제도, 매년 보험료 납부자는 계약 자동연장

- 퇴직공무원 신규 가입자 6,782명, (전년 2,090명 대비 224.5% 1
- 개인보험 가입대비 인당 721천원 보험료 절감

# 1. 공무원연금 및 재해보상제도



1-1 제도 개요

1-2 발전과정

1-3 재정전망

1-4 운영구조

## 1-1

### 제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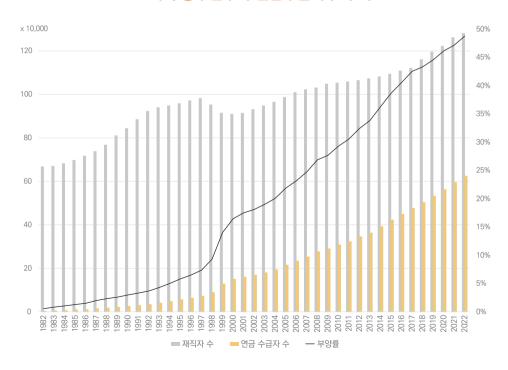
### ☑ 목적과 적용대상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는 일반 국민연금제도(National Pension System)에 앞서 도입된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사망, 재직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직업공무원제(career-based civil service)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공무원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연금제도이다. 적용대상을 보면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 경찰·소방 공무원, 법원판사·검찰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하나의 독립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말 현재 현직공무원 1,280,994명과 연금수급자 608,711명(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20,497명 포함)을 합하여 총 1,889,705명이 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향후 연금수급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로인해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의 연금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 공무원수와 연금수급자수 추이



### □ 급여의 종류

### 〈연금급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이 중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퇴직급여의 경우, 제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되고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전액 일시금 수령) 혹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부분 일시금 수령)이 지급된다. 한편, 10년 미만 근무한 단기재직 공무원이 이직 후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공적연금간 연계를 신청하게 되면 퇴직일시금 대신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는 기준소득, 지급률, 재직기반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2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7%를 적용받고, 65세에 연금이 개시된다. (기존 재직자의 경우, 각 연금 개혁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안분하여 당시 법을 적용받아 계산한다)

###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거나 장해상태로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 하는 급여이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가 있다. 공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할 때에는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로 퇴직했을 때는 장해연금이나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며, 사망했을 때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일시금 형태의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재해보상급여 중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해서는 특별보상으로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2016년부터 공무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했을 때, 또는 퇴직 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이다. 재난부조금은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때에 지급한다.

<sup>\*</sup> 비공무상 장해급여: 장해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됨

## 1-2

### 발전과정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 이상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특징을 크게 살펴보면 1990년대 초까지는 연금 수혜를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의 비용부담률 인상 및 연금급여 등 수혜를 축소하는 방식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개혁을 통하여 연금 수 지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비중을 강화했으며, 2009년에는 비용부담률 인상,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등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있었다. 또한, 2015년에는 재정안정화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의 개혁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이후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 사업의 주요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태동기** (1960~1962)

-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직, 경찰·소방직. 법원공무원, 군인 등을 포괄하여 적용하였음. 다만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적용에서 제외되었음.
- 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유족일시금, 장해연금 등 5종의 장기급여를 실시
- 비용은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보수월액의 2.3%를 부담

### **확대기** (1963~1966)

- 1962년 8월 공무원연금법을 전문 개정하고 그간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공무원 복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의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체제를 확립함
- 급여의 종류에 있어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등 5종의 단기급여를 신설하였고, 유족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군인연금법의 제정으로 군인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1962년)

### **발전기** (1967~1981)

- 1966년 4월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의 개정을 계기로 연금기금 운용 방법이 크게 달라짐
  - 즉, 당해 연도의 잉여금을 정부 예산상의 세입세출과는 완전 분리하여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설치
  - 또한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예탁하던 기금을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매입,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금융기관에의 예입, 재정자금에의 예탁 등의 방법으로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연금 급여 면에서도 퇴직연금지급률이 40~50%에서 50~70%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퇴직일시금도 종전보다 1.5 배 정도 인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짐

### **전환기** (1982~1995)

- 20년 동안 정부에서 운영하던 공무원연금 업무를 별도의 독립법인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변경
  -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확대실시 등을 위하여 1982년 2월 1일 사업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공공기관 설립
- 이를 통해 연금기금을 통한 각종 후생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연금제도면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수혜확 대를 위해 급여 종류의 다양화 및 급여액 수준의 인상조치가 이루어짐

### **☑ 제도 개혁기** (1996년~현재)

•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연금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연금재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유지하면 공무원 복지의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게 됨. 이러한 연금개혁은 현재까지 크게 4차에 걸쳐 단행되었음

### 〈제1차 연금개혁: 1995년〉

- 20여 년간 고정되었던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비용부담률이 인상되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급여이나 연금기 금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던 퇴직수당,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 담하도록 변경
- 급여면에 있어서도 법 개정 이후 임용자에 대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신설, 공공기관 중 연금지급 정지대 상기관의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제2차 연금개혁: 2000년〉

-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비용부담률을 올리고 향후 급여의 부족분은 매년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 입구조를 개선
- 급여면에서도 연금지급개시연령제의 확대, 연금액 인상방법의 변경(공무원보수인상률→소비자물가지수변 동률에 연동), 연금지급정지제도의 확대 등 시행
- 이러한 개혁 조치 중에서 연금액 인상방법 변경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반발로 2003년에는 이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단행
- 연금액 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로 하되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2%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 발생 시 이에 대한 정책적 조정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제3차 연금개혁: 2006~2009년〉

- 2006년 정부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이 위원회에는 각계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1기 및 2기의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장기간의 논의를 진행하였음. 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혁안이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음
- 개혁내용을 보면, 먼저 연금산정소득을 기본급과 일부수당만을 포함한 '보수월액(총소득의 65%)'에서 총소 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 비용부담률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한편, 연금액 산정을 최종보수 3년 평균에서 생 애평균소득으로 전환하였음
-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법개정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
- 연금액 조정방식은 정책조정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 연동으로 전환
- 유족연금지급률을 법 개정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70%에서 60%로 인하
- 기타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강화하였으며,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연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제4차 연금개혁: 2014~2015년〉

•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요인은 지속되었고, 특히 일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자 다시 개혁을 단행하였음. 특히, 2014년부터 논의되어 2015년에 완료한 이번 개혁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오던 것과 달리, 여야 국회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되었으며 다양한 이익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 4차 연금개혁 주요 내용

=	구 분	종 전	개 정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b>14%</b> (공무원 7% + 정부 7%)	기준소득월액의 <b>18%</b> (단계적 인상) * <sup>'16년</sup> 16% → <sup>'17년</sup> 16.5% → <sup>'18년</sup> 17% → <sup>'19년</sup> 17.5%→ <sup>'20년</sup> 18%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b>1.9%</b>	재직기간 1년당 <b>1.7%</b> (단계적 인하)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0년1.72% → '35년1.7%
소득재분	l배 요소 도입	없음	지급률 1.7% 중 1%에 재분배 요소 도입
	두월액 상한의 향 조정	<b>1.8배</b>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1.6배로 하향 조정
연금 수	급요건 조정	20년	10년
재직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09년 이전 임용자 <b>60세</b> '10년 이후 임용자 <b>65세</b>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 <sup>22년</sup> 61세 → ' <sup>24년</sup> 62세 → ' <sup>27년</sup> 63세 → ' <sup>30년</sup> 64세 → ' <sup>33년</sup> 65세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09년 이전 임용자 <b>70%</b> '10년 이후 임용자 <b>60%</b>	임용시기와 무관하게 60% 적용 * 개정 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연금액 한시 동결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5년간 동결 ('16 ~ '20년)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선거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전액 정지 포함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일부 정지	정지 기준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14년 338만원)	정지 기준 : 평균연금월액 ( <sup>'14년</sup> 224만원)
<b>5</b> ⊓		심사 대상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b>(부동산임</b> <b>대소득 제외)</b>	심사 대상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b>(부동산임대소득 포함)</b>
분할연금제 도입		없 음	<b>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시</b> <b>해당기간 1/2 분할지급</b>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없음	비공무상 장해로 퇴직시 지급 (공무상 장해연금액의 1/2 수준)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재해보상제도 분리 독립 체제 형성기 (2018년~현재)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목적 및 재원을 달리함에도 그간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면서,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되지 못하였음
- 아울러 민간의 산업재해보상에 비해 낮은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2018년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 요 내 용
① 위험직무순직요건 확대	•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
② 순직·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수준 현실화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최고(1.6배)·최저(0.5배) 보상기준 도입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재직기간별 차등 지급 폐지
③ 재해보상심사체계 개편	• (1심)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 • (재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
④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신설 • 재해예방사업, 재활 및 직무복귀지원 사업 근거 마련
⑤ 비정규직 등 순직근거 마련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요건 및 특례 신설

## 1-3

## 재정전망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는 ' Median Neutral ' 기준으로 GDP 대비 2020년 0.1% 적자에서 2040년 -0.4%, 2060년 -0.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 Median Positive' 기준을 적용하면 GDP 대비 2040년 -0.3%, 2060년 -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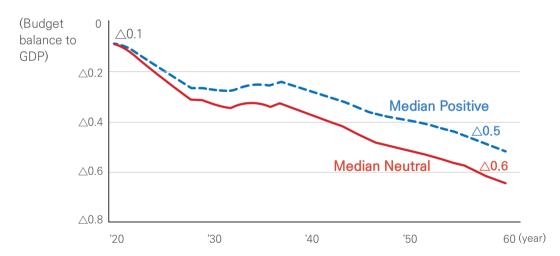
### 〈참고〉

- Median Neutral: 인구추세 및 경제성장률이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Median Positive: 인구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가정

GDP 대비 공무원연금의 재정	2020	2040	2060
Median Neutral	-0.1%	-0.4%	-0.6%
Median Positive	-0.1%	-0.3%	-0.5%

### GDP 대비 재정전망(%)



## 1-4 운영구조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은 인사혁신처장(제도 관장) - 공무원연금공단(업무 총괄) -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업무 집행)의 유기적 분담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제도 전반을 관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관리·감독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의 운용과 급여의 지급, 기여금 및 부담금의 징수 등 연금관리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금취급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원천징수, 급여사유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취급기관은 1,419개로 분류되어 있다.

# 2. 공무원 연금공단



2-1 공단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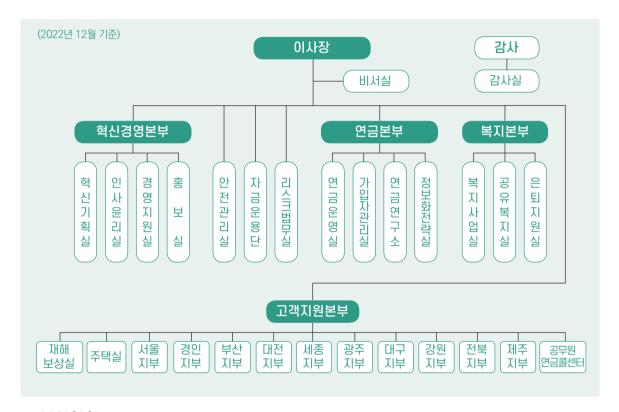
2-2 사업구조

2-3 주요사업

## 2-1

## 공단개요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해 1982년 2월 1일 설립된 공단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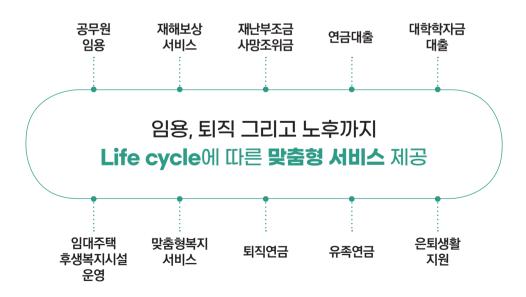
구 분	조 직	인원(명)
임 원	<del>-</del>	5
비서실	1실	2
혁신경영본부	4실	98
안전관리실	1실	8
자금운용단	1단	26
리스크법무실	1실	14
연금본부	3실 1연구소	135
복지본부	3실	70
고객지원본부	2실 10지부 1센터	240
감사실	1실	11
합 계	4본부 16실 1단 1연구소 10지부 1센터	609

## 2-2 사업구조

공단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연금사업, 재해보상사업, 기금운용사업, 기타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금사업 및 재해보상사업	•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 퇴직급여, 재해보상급여, 그 밖의 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사업	• 금융기관에의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출 •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 •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국가위탁사업	<ul> <li>대여학자금 대출</li> <li>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리</li> <li>은퇴생활 지원사업 등</li> </ul>

공단의 사업은 공무원 개인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임용시기부터 사망 시까지 시기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도로 구성되어 있다.



## 2-3 주요사업

### □ 연금

공무원과 정부로부터 급여비용을 징수하고 공무원이 퇴직, 사망 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생애주기별 연금서비스 •











### 임용

- ① 신규임용
- ② 군경력산입
- ③ 합산 승인
- ④ 휴직·복직
- ⑤ 기여금 납부 종료

### 퇴직

- ⑥ 급여 미청구 안내
- ⑦ 급여청구
- ⑧ 퇴직급여 지급 결정
- ⑨ 퇴직급여 지급
- ⑩ 연금지급도래
- ① 퇴직연금 지급

### 사망

- ⑫ 급여환수
- ③ 연금종결
- ⑭ 유족연금수급

### ☑ 재해보상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무상 재해 발생					
부상 · 질병	장해	사망 (사유발생일 '18.3.20. 이후)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9.75%     공무상 요양을 한 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자해일시금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중 선택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지급      순직유족연금     본인 기준소득월액 × (38%+유족 1명당 5% 가산)			
<ul> <li>재활급여 <ul> <li>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li> </ul> </li> <li>간병급여 <ul> <li>공무상 요양 종료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li> </ul> </li> </ul>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본인 기준소득월액 × (43%+유족 1명당 5% 가산)  * 유족 1명당 5% 가산금액의 합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대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선택 가능(병급 불가)			

이와 함께,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조위금 또는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 □ 금융자산운용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량한 금융상품을 선별하여 투자·운용하는 사업이다.

기금의 운용방식은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자산운용위원회에서 금융자산배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시장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투자하고 투자자산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리스크관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후 외부 펀드평가기관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시 운용체계 등에 피드백하게 된다.

또한 선진화된 금융자산종합관리시스템(AMS)를 구축하여 자산배분·평가·위험관리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금융정보화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 □ 융자사업

공무원이 대학등록금, 여유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국고 또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이다.

### 〈학자금 대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 〈연금대부〉

공무원의 가계자금 대출로 생활안정 및 기금증식에 기여한다.

### 〈금융기관 알선대출〉

예상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다.

### □ 주택사업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무주택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면서 기금수익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임대주택 운영〉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2개 단지에 19,466세대의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금의 80% 이내로 무주택 공무원에게 임대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다자녀 가구 등 특례자의 경우 최대 6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 〈주택건립 분양〉

무주택 공무원 및 무주택 연금수급자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고 있다. 2022년까지 수도권 등 33개 단지에 총 32,058세대를 공급하였다.

#### ☑ 시설운영사업

제도가입자인 공무원과 그 가족의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골프장, 호텔, 온천시설, 아쿠아피아, 놀이공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 ▶ 맞춤형 복지제도

정부가 사전에 설계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복 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이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2006.11월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7.1월부터 맞춤형복지 업무를 정부로부터 수 탁받아 운영 중 2014년부터 공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 등 209개 기관 약 92만 명이 사용 중에 있다.

#### □ 은퇴생활 지원사업

공무원이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퇴준비교육과 퇴직 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현직공 무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퇴직 이전〉

퇴직 이전에는 미래설계교육, 전직(轉職)설계교육 등 은퇴준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퇴직 8년 전, 5년 전, 3년 전, 1년 전 등으로 구분하여 퇴직 잔여시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퇴직 이후〉

퇴직 이후에는 배움과 나눔 등 사회공헌 교육, 사회참여·문화·생활 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공직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퇴직자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 275개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상록자원봉사단 36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3. 공무원 연금기금



#### 3-1 기금개요

- 3-1-1 조성과 운용
- 3-1-2 운용체계
- 3-1-3 운용방법

#### 3-2 운용성과

## 3-1 기금개요

#### 3-1-1 조성과 운용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다. 이 연금기금은 연금회계로 부터의 적립금과 연금기금을 금융자산, 연금대출, 시설·주택사업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연금보험료(개인기여금과 정부부담금) 수입이 급여지급액을 초 과하여 연금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연금기금이 급여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1995년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7년 6조 2,015억원에 달했던 기금규모가 2000년 말에는 1조 7,752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연금기금 감소로 인해 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보전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는 기금운용수익금 만큼 기금규모가 증가하여 2022년 말 현재 15조 1,176억원으로 커졌다.

공무원연금기금의 부문별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말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은 총 20조 8,343 억원이며, 금융자산 6조 2,163억원(29.8%), 연금대부 2조 531억원(9.9%), 학자금대부 2조 2,720억원(10.9%), 주택 및 시설사업 7조 528억원(33.9%), 기타 부담금미수금 등 3조 2,401억원(15.6%)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무원연금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агн		연금수지*		71700401	연 말
연도별	수 입	지 출	차 액	기금운용수익	기금규모
1981					5,491
1982	2,684	1,611	1,073	1,140	7,704
1984	3,673	1,841	1,832	1,461	14,672
1986	3,931	2,897	1,034	2,087	20,951
1988	5,418	4,596	822	2,641	27,893
1990	7,898	7,236	662	3,345	35,786
1992	12,767	12,095	672	3,810	44,918
1994	17,520	19,351	<b>▲</b> 1,831	5,242	52,414
1996	24,760	24,321	439	4,871	56,805
1998	33,164	50,698	<b>▲</b> 17,534	3,363	47,844
2000	34,374	43,832	<b>▲</b> 9,458	920	17,752
2002	39,512	35,736	3,776	2,604	27,276
2004	49,264	49,264		2,543	33,218
2006	61,775	61,775		3,934	42,229
2008	78,293	78,293		<b>▲</b> 1,182	46,861
2010	84,232	84,232		6,434	58,307
2011	89,391	89,391		1,798	60,105
2012	103,520	103,520		3,471	63,576
2013	107,624	107,624		20,094	83,670
2014	125,417	125,417		1,602	85,272
2015	136,769	136,769		2,270	87,542
2016	140,203	140,203		15,669	103,211
2017	148,820	148,820		6,295	109,506
2018	157,366	157,366		<b>▲</b> 1,127	108,379
2019	169,102	169,102		12,050	120,429
2020	181,574	181,574		12,658	133,087
2021	189,047	189,047		18,665	151,752
2022	208,814	208,814		<b>▲</b> 576	151,176

<sup>\*</sup> 연금수지에는 퇴직수당 포함,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는 제외

#### 공무원연금자산의 부문별 자산규모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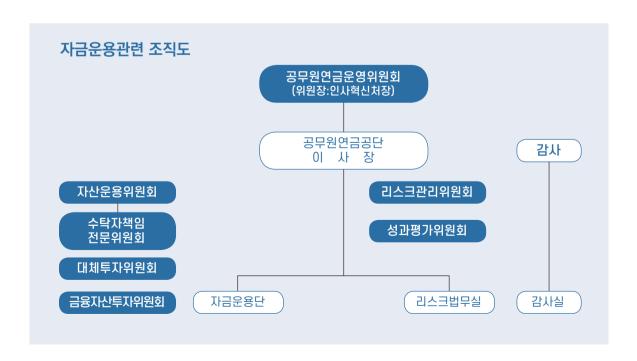
구분	금융자산	연금대부	학자금대부	주택 및 시설	기 타	자산합계
액수	62,163	20,531	22,720	70,528	32,401	208,343

#### 3-1-2 운용체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은 공무원연금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간 금융자산 중심의 규정을 대출자산 및 실물자산까지 포함시켜, 전체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9년 6월 공단 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기금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공단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운용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금융자산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2010년 6월에 제정된 금융자산은용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자금운용단』에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산배분·평가·위험관리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 정을 하고 있다.

금융자산 운용기구는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및「실물자산운용위원회」)와 실질적인 운용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해 자산운용기구와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과평가위원회」와「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특히 2단계 자산배분절차를 거쳐 심의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 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내역

구분		자산운용 위원회	대체투자 위원회	실물자산 운용위원회	성과평가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목적(	목적(기능) 전체자산 배분·운용 대체투자 심의		실물자산 배분·운용	성과평가 심의	금융실물자산 위험관리	
위원수		10명	29명	11명	7명	9명
구성원	위원장	혁신경영본부장	자금운용단장	복지본부장	외부위원	외부위원

#### 3-1-3 운용방법

#### □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원칙

공무원연금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목적은 기금증식을 통해 공무원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유동성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기금은 기금운용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정성·수익성·유동성·복지성에 따라 자산을 운용한다. 즉,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성, 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면서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원활한 연금급여 지급 및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을 위한 유동성,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복지성에 준수하여 운용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목표수익률과 위험 한도를 기초로 앞으로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안 및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자산배분안에는 경제 상황 또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군 별 비중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 기금운용의 자산군 분류

#### 자산군 분류

#### 금융자산

- 채권 (국내, 해외 / 직접, 위탁 / 국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등)
- 주식 (국내, 해외 / 직접, 위탁 / 주식, 순수주식형,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등)
- 대체투자 (부동산펀드, 사모펀드, SOC펀드 등)
- 단기자금 (지불준비금 / 단기특정금전신탁, MMF, MMDA, 예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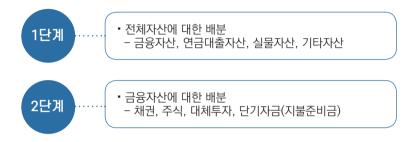
#### 실물자산

- 공무원주택자산
- 공무원시설운영자산

#### 연금대출자산

#### ▶ 자산배분 전략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중장기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목표 자산배분 비중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공단 자산 운용상 특이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1단계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전체자산 배분전략(금융자산, 융자자산, 주택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을 수립하고, 2단계로서 금융자산의 배분전략(채권, 주식,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을 수립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은 기금운용의 목표를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에 두고 적정 수준의 추가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물가상 승률(CPI) + 추가수익률(a)}로 하고, 금융자산 허용위험 한도는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와 장기 안정적 목표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자산 운용성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하락 위험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최대한도로 설정한다.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산 배분의 비중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금융자산의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략적 자산 배분비중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투자위원회를 통해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위험관리 체계

각종 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법규위험, 운영위험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자산 운용에 따른 위험과 자금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궁극적목표로 하고 있다.

#### 자산운용의 위험종류

- 시장위험 :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
- 신용위험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 원리금 등을 애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
- 유동성위험 :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법규위험: 법 해석 또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기금이 손실을 보게 될 위험
- 운영위험: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 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

#### ▷ 성과평가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따라 산출된 자산운용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자산운용 및 보상체계에 반영 (Feed-back)하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와 병행하고 있다.

#### ▷ 공시 및 의결권 행사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용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제반 결과를 공시하게 되어 있다. 공시의 필수사항으로 5년 이상의 기간실적자료, 시간가중수익률 사용, 벤치마크,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사용여부, 수수료 포함 여부 등이 있으며, 권고사항으로 독립된 제3기관에 의한 검증, 회사내부사항(인사이동 등), 위험지표 등이 있다. 특히,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에 공시하고 있다.

#### 주요 공시사항

- 월간 및 분기 공시사항 : 투자현황 및 투자상품별 운용수익률 등
- 연간 공시사항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수입지출 및 기금적립현황, 총 투자현황 및 투자상품별 운용수익률, 기금운용지침 등
- 수시 공시사항 : 이사장이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 금융자산투자

기금운용규정 제4조와 제16조에 따라, 안정성·수익성·유동성·공공성을 고려하면서 기준수익률 이상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금융자산의 투자 의사결정체계는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등)와 실질적인 운용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내부 운용조직인 자금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단의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금융투자자산은 채권, 주식, 대체투자, 지불준비금 등으로 나누어 운용하게 되어 있다.

#### □ 금융자산 배분계획

#### 2022년 자산군별 비중조정 및 허용 범위

(단위: 억원, %, %p)

구분		합 계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비중	목표비중	100	31.8	10.9	17.6	13.7	26.0
기준	허용범위		±8.5	±6.5	±6.0	±6.5	±6.5
금	액	83,366	26,510	9,087	14,672	11,422	21,675

<sup>\* 2021</sup>년도 제2회 자산운용위원회('21.4.)에서 확정된 2022년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

#### 2022년 자산군별 목표수익률 설정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채 권	주 식	대체투자	단기자산
운용평잔	97,761	31,991	24,363	21,034	20,373
목표수익	3,657	681	1,551	1,119	306
목표수익률	3.7	2.1	6.4	5.3	1.5

## 3-2 운용성과

#### 공무원연금기금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2021	년말	2022	년말
	<b>子</b>	금 액	자산대비 비율	금 액	자산대비 비율
	공공기금예탁	_		_	
	금융자산운용	81,246	38.1%	62,163	29.8%
	- 채 권	29,033		22,062	
	- 주 식	23,212		15,102	
	- 대체투자	20,910		21,813	
	- 지불준비금	7,900		3,000	
자 산	- 미수금 등	191		186	
	연금대출사업*	19,376	9.1%	20,531	9.9%
	학자금대출사업	24,833	11.7%	22,720	10.9%
	주택사업	54,205	25.4%	58,285	28.0%
	시설운영사업	12,267	5.8%	12,243	5.9%
	기타사업	21,171	9.9%	32,401	15.5%
	자 산 계	213,098	100%	208,343	100%
	주택임대보증금	18,863		18,990	
	주택도시기금차입금	696		792	
부 채	임대보증금 등	82		91	
구 제	대여학자금수탁금	35,127		32,760	
	부담금 선수금 등	6,578		4,534	
	부 채 계	61,346	28.8%	57,167	27.4%
	기 금 총 액	151,752	71.2%	151,176	72.6%
	기금증가액	18,666		<b>▲</b> 576	

<sup>\*</sup> 연금대출사업 : 연금대부자산의 대출채권 잔액 외에도 보통예금 및 미수이자수익 포함된 금액

#### □ 금융자산 운용성과

#### 공무원연금기금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2021	년말	2022년말		
	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국 내	23,636	27.7	16,742	27.0	
채 권	해 외	5,396	6.2	5,320	8.6	
	전 체	29,032	33.9	22,062	35.6	
	국 내	12,701	13.9	6,985	11.3	
주 식	해 외	10,511	11.8	8,117	13.1	
	전 체	23,212	25.7	15,102	24.4	
대처	투자	20,911	23.1	21,813	35.2	
단기	l자금	7,900	17.3	3,000	4.8	
금융부	문 전체	81,055	100.0	61,977	100.0	

#### 최근 5년간 금융자산 수익률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 1.7	8.0	9.6	8.1	<b>▲</b> 4.4

#### 금융자산의 세부자산별 평잔수익률

(단위 : 억원, %)

구	분	평잔액	수 익	수익률
	국 내	21,826	<b>▲</b> 1,365	<b>▲</b> 6.3
채 권	해 외	5,936	<b>▲</b> 776	<b>▲</b> 13.1
	전 체	27,762	<b>▲</b> 2,141	<b>▲</b> 7.7
	국 내	12,172	<b>▲</b> 2,818	▲ 23.2
주 식	해 외	10,221	<b>▲</b> 1,420	<b>▲</b> 13.9
	전 체	22,393	<b>▲</b> 4,238	<b>▲</b> 18.9
대체	투자	20,945	2,130	10.2
단기	자금	16,748	427	2.6
7	1	87,848	▲ 3,822	<b>▲</b> 4.4

#### ☑ 연금대출자산 운용성과

#### 연도별 연금대출자산 투자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별	대출건수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잔액
2017	46,130	8,000	6,489	14,282
2018	37,419	7,954	7,189	15,047
2019	39,754	7,999	7,045	16,001
2020	38,761	9,000	8,332	16,669
2021	38,385	9,484	6,808	19,346
2022	30,120	7,500	6,339	20,507

#### 연도별 실적 비교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출인원	60,144	45,241	44,301	37,031	46,130	37,419	39,754	38,761	38,385	30,120
대출금액	8,898	7,000	6,997	6,300	8,000	7,954	7,999	9,000	9,484	7,500
운용평잔	12,855	14,529	14,970	15,053	14,256	15,453	15,880	17,095	19,229	20,530
이자수익	589	594	501	470	477	563	520	509	476	702
수익률(%)	4.58	4.09	3.35	3.12	3.34	3.64	3.27	2.98	2.48	3.42

#### ※ 대출이자율 변동내역(평균이율)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이자율	4.58	4.08	3.34	3.11	3.33	3.66	3.45	3.00	2.92	3.98
(특례)	(-)	(-)	(-)	(-)	(-)	(3.61)	(3.00)	(3.00)	(2.13)	(2.98)

<sup>\* &#</sup>x27;18.12.부터 특례대출 이율인하

#### ☑ 실물자산 운용성과

#### ① 주택사업

#### 연도별 주택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구분 2018		2020	2021	2022	
투자평잔	22,536	22,605	22,614	22,753	23,209	

<sup>\*</sup> 부동산별 최초 취득가액 평잔 기준 작성

#### 연도별 주택사업 투자수익률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익	724	1,512	1,750	1,864	383	
수익률	3.21	6.69	7.74	8.19	1.65	

<sup>\*</sup> 임대주택 매각 및 재건축 평가이익 포함 수익률임(장부가 투자액 기준임)

#### ② 시설운영사업

#### 연도별 시설운영사업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영손익	172	207	115	171	263
감가상각비	56	69	64	66	62
계	228	276	179	237	325
취득가평잔	3,435	3,483	3,606	3,609	3,552
수익률(%)	6.6%	7.9%	5.0%	6.6%	9.2%

<sup>※</sup> 수 익: 당기순이익

<sup>※</sup> 수익률: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제8조에 의한 취득가수익률(당기손익 + 건축물 감가상각비 ± 자산매각손익) / 취득가평잔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4-2 손익계산서

## 4-1

### 재무상태표

과 목	2022년	2021년
자산	20,834,310,420,811	21,309,805,183,821
l.유동자산	3,809,853,470,355	4,115,218,136,598
(1)당좌자산	3,420,283,617,591	3,620,594,092,096
1.현금	33,168,800	30,588,400
2.보통예금	770,858,403,410	159,675,187,528
3.지불준비금	300,000,000,000	790,000,000,000
4.현금성자산미수수익	3,513,037,092	834,579,692
5.단기예치금	61,604,457,951	58,452,326,463
6.미수이자수익	20,137,927,691	21,101,816,765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 3,342,855,946	- 4,952,864,306
7.급여자금전도금	98,192,720,600	36,808,304,680
8.단기공무원연금대부금	451,994,711,548	463,030,311,000
단기공무원연금대부금대손충당금	- 2,344,722,566	- 2,408,220,647
9.단기직원대부금	89,571,462	96,927,300
단기직원대부금대손충당금	- 895,710	- 969,270
10.단기부담금정산미수금	787,392,848	
11.단기채무증권	179,506,463,077	401,860,329,200
12.단기지분증권	484,821,134,000	770,143,021,140
13.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1,030,568,067	955,991,218
14.미수연금수익	118,229,978,855	87,402,953,586
15.단기미수보전금	910,072,234,870	813,809,634,154
16.미수기타수익	337,665,459	337,665,459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	- 337,665,459	- 337,665,459
17.기타의미수금	32,367,209,786	30,806,214,698
기타의 미수금 대손충당금	- 7,217,383,878	- 7,005,824,080
(2)재고자산	885,421,642	77,189,494,247
1.상품	16,059,863	30,968,777
2.저장품	869,361,779	774,406,910
3.미완성분양주택		76,384,118,560
(3)기타유동자산	22,577,191,116	28,781,123,579
1.선급금	1,675,800,000	13,155,700,000
2.선급비용	260,447,126	306,281,749
3.선급법인세	11,936,823,990	10,868,981,730
4.단기임차보증금	8,704,120,000	4,450,160,100
(4)대부자산	366,107,240,006	388,653,426,676
1.단기대여학자금	375,614,293,002	398,565,414,930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 9,507,052,996	- 9,911,988,254

과 목	2022년	2021년
II.비유동자산	17,024,456,950,456	17,194,587,047,223
(1)투자자산	6,805,369,377,827	7,590,441,536,065
1.장기공무원연금대부금	1,580,293,382,865	1,453,224,952,745
장기공무원연금대부금대손충당금	- 8,088,731,681	- 7,451,410,945
2.장기채무증권	1,310,879,406,052	1,546,243,700,357
3.장기지분증권	3,922,285,320,591	4,598,424,293,908
(2)대부자산	1,905,485,770,817	2,094,314,687,519
1.장기대여학자금	2,076,159,656,561	2,265,254,951,462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 170,673,885,744	- 170,940,263,943
(3)유형자산	6,999,459,962,927	6,530,164,573,633
1.토지	5,074,425,161,218	4,728,775,847,201
2.건물	1,847,659,959,893	1,584,720,058,316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59,248,712,513	- 627,237,524
3.건설중인자산	14,384,541,378	125,282,096,205
4.차량운반구	16,588,870,668	15,710,857,344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3,025,364,324	- 12,480,493,712
5.집기비품	61,988,850,996	48,165,245,866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43,000,247,338	- 40,410,897,954
6.기계장치	46,346,162,696	33,655,067,824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30,003,372,477	- 28,079,707,690
7.구축물	68,584,744,438	57,889,142,279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7,340,205,087	- 2,326,468,584
8.기타유형자산	22,104,814,062	19,895,540,382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5,240,683	- 4,476,320
(4)무형자산	30,970,294,272	4,252,613,200
1.소프트웨어	30,882,727,711	4,115,983,205
2.산업재산권	2,170,700	2,436,500
3.기타무형자산	85,395,861	134,193,495
(5)기타비유동자산	1,283,171,544,613	975,413,636,806
1.장기직원대부금	984,541,118	1,039,007,138
장기직원대부금대손충당금	- 9,845,410	- 10,390,070
2.장기임차보증금	5,579,931,100	8,683,168,000
3.장기미수보전금	1,214,439,021,375	910,072,234,870
4.장기부담금정산미수금	13,542,519,433	787,392,848
5.장기미수연금수익	43,031,021,900	49,534,099,900
6.예치금	3,520,352,290	3,205,690,290
7.장기기타의미수금	2,377,411,406	2,537,889,775
장기미수금대손충당금	- 293,408,599	- 435,455,945
III.본지부계정	-	-
(1)본지부계정	-	-
1.본부	- 1,475,539,178,974	- 1,463,635,707,038
2.지부	1,475,539,178,974	1,463,635,707,038

과 목	2022년	2021년
부채	5,716,694,655,979	6,134,565,287,830
l.유동부채	1,423,184,515,716	1,822,141,141,361
(1)유동부채	1,281,025,515,716	1,585,312,621,361
1.매입채무	448,690,238	224,352,706
2.미지급금	9,585,141,303	3,534,445,989
3.선수금	245,452,901	154,214,492
4.예수금	520,145,089	435,052,968
5.선수수익	426,486,870	474112010
6.예수보증금	8,315,621,310	4,068,653,430
7.단기임대보증금	4,467,611,046	5,369,075,116
8.선수기여금	1,124,175,127	796,783,305
9.선수부담금	279,512,874,670	532,514,850,220
10.급여지급통지액	98,192,720,600	36,808,304,680
11.미지급급여	23,881,743,368	31,747,033,327
12.연금소득예수금	8,042,047,060	6,324,423,090
13.단기부담금정산선수금	14,898,431,008	19,914,952,565
14.선수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311,525,126	230,419,463
15.단기주택임대보증금	831,052,850,000	942,715,948,000
(2)단기대여학자금수탁금	142,159,000,000	236,828,520,000
1.단기대여학자금수탁금_국가	11,798,000,000	77,371,770,000
2.단기대여학자금수탁금_지자체	130,361,000,000	159,456,750,000
II.비유동부채	1,159,954,141,282	1,036,763,917,488
(1)비유동부채	1,159,954,141,282	1,036,763,917,488
1.퇴직급여충당부채	38,214,490,165	35,300,026,858
2.퇴직금전환금	- 24,247,668	- 27,106,392
3.퇴직보험예치금	- 26,443,948,850	- 22,304,971,194
4.임대주택수선충당금	67,512,433,185	61,902,399,608
5.장기주택임대보증금	1,067,965,130,000	943,539,740,000
6.장기부담금정산선수금	7,749,566,850	14,898,431,008
7.장기임대보증금	4,980,717,600	3,455,397,600
III.대여학자금수탁금	3,133,555,998,981	3,275,660,228,981
(1)대여학자금수탁금	3,133,555,998,981	3,275,660,228,981
1.대여학자금수탁금_국가	1,060,591,528,818	1,072,364,668,818
2.대여학자금수탁금_지자체	2,072,964,470,163	2,203,295,560,163

과 목	2022년	2021년
자본	15,117,615,764,832	15,175,239,895,991
IV.공무원연금기금	15,117,615,764,832	15,175,239,895,991
(1)자본금	5,606,796,498,207	5,606,796,498,207
1.기금전입금	828,946,992,859	828,946,992,859
2.적립금	763,927,722,000	763,927,722,000
3.결산상잉여금증가	4,013,921,783,348	4,013,921,783,348
(2)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68,246,157,727	5,440,047,786,313
1.유가증권평가이익	669,096,537,434	1,241,831,553,382
채무증권평가이익	1,060,912,109	13,308,750,089
지분증권평가이익	668,035,625,325	1,228,522,803,293
2.유가증권평가손실	- 395,660,650,083	- 106,950,128,240
채무증권평가손실	- 206,363,882,726	- 51,930,172,442
지분증권평가손실	- 189,296,767,357	- 55,019,955,798
3.유형자산재평가이익	4,594,810,270,376	4,305,166,361,171
토지재평가이익	4,209,156,612,776	3,939,824,024,774
건물재평가이익	381,411,064,184	360,637,372,654
 구축물재평가이익	3,366,988,567	3,825,398,169
기계장치재평가이익	5,292,449	9,253,174
입목재평가이익	870,312,400	870,312,400
(3)이익잉여금	4,642,573,108,898	4,128,395,611,471
1.이익적립금증가	4,128,395,611,471	3,470,546,029,604
2.미처분이익잉여금	514,177,497,427	657,849,581,867
당기순이익	514,177,497,427	657,849,581,867

## 4-2 손익계산서

과 목	2022년	2021년		
비용	21,321,155,035,718	19,508,258,912,570		
l.사업비용	21,235,330,186,770	19,215,510,661,279		
(1)금융부문비용	83,814,373,553	54,534,658,829		
1.지급수수료	3,735,184,579	5,025,758,495		
2.세금공과	514,055,938	459,742,170		
3.소송비	62,852,955	91,780,639		
4.자산운용비	260,554,576	249,312,870		
5.용역비	292,927,935	277,241,633		
6.단기유가증권처분손실	14,227,447,506	6,199,318,789		
7.장기유가증권처분손실	9,652,199,950	0		
8.유가증권손상차손	874,854,792	4,471,830,915		
9.융자보조비용	54,194,295,322	37,759,673,318		
(2)복지및부동산사업비	143,932,655,055	133,238,712,389		
1.부동산관리비	932,716,744	1,262,864,017		
 2.지급임차료	1,121,127,898	1,034,269,706		
3.지급수수료	2,941,067,466	2,522,922,335		
4.소송비	78,767,683	149,382,539		
5.수선유지비	511,301,260	461,026,319		
6.시설유지비	25,166,598,422	22,665,770,671		
7.분양주택판매비	1,076,490	4,565,250		
8.상품매입	2,737,709,980	2,042,120,045		
9.식재료비	4,735,471,694	2,839,578,095		
10.음료재료비	681,725,718	578,954,525		
11.기타재료비	407,973,619	480,315,311		
12.광고선전비	0	285,000		
13.세금공과	20,698,208,970	17,030,067,951		
14.감가상각비	55,491,024,675	52,775,549,157		
15.보험료	386,094,109	292,907,695		
16.전력수도료	3,418,224,243	2,697,010,523		
17.연료비	1,214,000,239	800,001,219		
18.용역비	19,790,101,068	19,635,458,979		
19.영업비	2,798,504,206	2,599,039,282		
20.대손상각비	654,586,917	1,309,322,734		
21.분양주택관리사업비	95,083,114	1,947,708,573		
22.연구개발비	0	49,400,000		
23.무형자산상각비	71,290,540	60,192,463		

과 목	2022년	2021년
(3)연금급여사업비	21,000,260,234,047	19,021,181,497,965
 1.퇴직급여	18,084,061,456,559	16,614,266,922,507
2.요양급여	29,210,581,300	30,688,756,229
3.퇴직수당	2,712,953,402,020	2,216,637,431,340
4.부조급여	51,095,479,120	47,639,021,210
 5.연금이체급여	16,056,316,300	14,966,513,350
6.위험직무순직급여	6,580,675,740	6,360,723,140
	119,668,660	59,519,160
8.소송비	75,062,818	104,319,489
9.연금사업운영비	0	9,238,680
 10.장해급여	67,448,284,020	63,858,443,070
 11.순직급여	32,659,307,510	26,590,609,790
(4)전산업무비	6,878,875,021	6153084422
 1.전산용품비	338,804,003	341,762,661
2.전산시설수선비	5,873,474,558	5,146,151,101
3.전산용역비	666,596,460	665,170,660
4.전산연구개발비	0	0
(5)업무위탁비	444,049,094	402,707,674
 1.위탁수수료	8,945,200	9,445,200
2.용역비	435,103,894	393262474
II.관리운영비	65,938,626,668	66,695,116,798
(1)인건비	50,183,096,567	50,789,111,510
1.퇴직금	5,712,246,195	6,409,835,024
2.인건비	44,470,850,372	44,379,276,486
(2)일반경비	15,755,530,101	15,906,005,288
1.복리후생비	1,504,079,139	1,470,475,144
2.법정부담금	4,102,156,980	4,056,304,260
3.여비교통비	850,093,764	551,167,612
4.유류비	25,704,633	27,484,158
5.피복비	10436000	94,897,260
6.지급임차료	135,902,027	126,746,239
7.소송비	10,280,227	0
8.차량비	67,391,710	47,058,720
9.연구개발비	499,143,520	642,965,688
10.일반수용비	1,530,196,595	1,602,708,710
11.공공요금및제세금	1,177,697,870	1,239,144,336
12.업무추진비	459,911,504	494,418,741
13.회의비	298,595,495	284,436,077
14.교육훈련비	884,225,342	850,738,502
15.포상비	80,894,640	87,139,340
16.감가상각비	1,870,992,397	2,323,957,628
17.무형자산상각비	1,907,475,258	2,006,362,873
18.용역비	340,353,000	0

과 목	2022년	2021년
III.사업외비용	19,886,222,280	226051333605
(1)사업외비용	6,467,349,802	115,730,366,758
1.유형자산처분손실	1,817,294,926	13,354,162
2.연금지제작비	2,232,677,571	2,224,304,891
3.부담금과납이자비용	166,142,300	180,396,730
4.교육비	1,544,587,238	920,569,521
5.사회참여활동지원비	706,647,767	872,656,416
6.유형자산재평가손실	0	99,936,772,045
7.기타유가증권처분손실	0	11,582,312,993
(2)기타사업외비용	13,418,872,478	110,320,966,847
 1.잡손실	43,581,652	333,972,458
2.연금전출금(비용)	0	99,243,319,000
3.타회계조정이자(비용)	0	0
4.맞춤형복지운영비	2,029,325,127	2,157,040,695
5.기타특별손실	10,060,100,107	8,171,931,081
6.기타대손상각비	1,285,865,592	414,703,613
7.소송충당부채전입액	0	0
IV.법인세등	0	1,800,888
(1)법인세등	0	1,800,888
1.법인세등	0	1,800,888
당기순이익	514,177,497,427	657,849,581,867
V.당기순이익	514,177,497,427	657,849,581,867
(1)당기순이익	514,177,497,427	657,849,581,867
1.당기순이익	514,177,497,427	657,849,581,867
수익	21,835,332,533,145	20,166,108,494,437
l.사업수익	21,758,970,298,180	19,963,752,150,531
	21,018,057,213,966	19,053,001,763,027
 1.연금기여금	6,291,729,074,377	6,208,834,768,897
2.연금부담금	7,299,673,223,420	7,038,078,017,470
3.재해보상부담금	192,431,769,938	179,967,740,780
4.퇴직수당부담금	2,712,953,402,020	2,216,637,431,340
5.연금이체부담금	76,182,764,490	70,244,391,640
6.보전금	4,445,086,979,721	3,239,996,093,900
 7.기금보전금	0	99,243,319,000
(2)금융자산운용수익	634,178,128,778	818,251,752,095
1.보통예금이자수익	56,786,191	77,316,912
2.지불준비금이자수익	42,672,929,946	18,062,374,546
3.정기예금이자수익	1,679,250,185	770,261,983
4.정기적금이자수익	1,834,998	662,219
5.주택도시기금이자수익	0	150,172,603
6.대여학자금이자수익	54,865,608,779	64,406,515,062
7.공무원연금대부이자수익	70,202,637,884	47,611,257,795

과 목	2022년	2021년
8.단기유가증권처분이익	57,641,271,341	132,546,480,265
9.유가증권처분이익	113,664,349,779	246,012,868,967
10.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2,225,364,184	2,225,365,518
11.유가증권이자수익	276,600,256,172	231,813,917,695
12.유가증권배당수익	14,549,471,800	74,574,558,530
13.기타금융자산이익	18,367,519	0
(3)대부수익	436,832,871	501,937,587
1.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436,832,871	501,937,587
(4)복지및부동산사업수익	106,298,122,565	91,996,697,822
1.부동산임대수익	9,729,752,292	9,508,089,431
2.주택임대수익	16,142,887,894	14,510,689,289
3.상품판매대금	3,338,648,879	2,491,565,532
4.식료판매대금	4,266,857,594	3,394,670,431
 5.음료판매대금	803,875,111	674,794,839
6.숙박시설이용료수입	4,234,340,558	1,665,944,400
7.휴욕시설수입	764,582,822	394,231,014
8.기타후생시설운영수익	4,435,237,834	4,038,601,167
9.골프시설이용료수입	62,074,794,029	54,731,746,784
10.공원시설이용료수입	507,145,552	586,364,935
II.사업외수익	76,362,234,965	202,356,343,906
(1)사업외수익	76,362,234,965	202,356,343,906
1.직원숙소임대수익	40,292,709	42,543,272
2.직원대부이자수익	3,150,750	2,980,680
3.연체료수익	1,299,027,433	1,082,608,151
4.예입금이자수익	15,026,232,676	1,891,720,240
5.부담금미납이자수익	22,385,450	40,310,290
6.잡수익	26,551,673,430	14,230,851,304
7.대손충당금환입	65,703,964	16,085,080
8.급여환수금	16,009,007,672	17,397,656,969
9.연금지광고수입	65,127,273	38,454,547
10.연금지구독료수입	2,311,412,000	2,280,939,000
11.유형자산처분이익	3,397,680,783	52,120,870,451
12.교육수입	3,747,188,884	535,881,038
13.환수이자수익	408,681,495	244,568,937
14.구상금수익	1,676,739,760	1,681,639,500
15.보험차익	13,171,495	4,980,767
16.재평가손실환입	449,243,259	104,728,938,264
17.자산수증이익	7,400,000	12,000,000
18.재고자산감액손실환입	0	5,998,220,105
19.소송충당부채환입액	0	5,095,311
20.지출금반납금	5,262,286,323	0
21.과오지급금회수금	5,829,609	0

# 5. 주요 통계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 현황
재직공무원 분포구조
퇴직공무원 분포구조
연금수급자 분포구조
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증감추이
직종별 공무원 현황
연금수급자 추이
연금선택 추이
급여종류별 지급추이
공무원연금기금 변동 추이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

####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 재직자

총 **1,280,994** 명



# 연금수급자

**★ 629,208** 명



퇴직연금수급자

**546,010** g



유족연금수급자

**79,456** 9



장해연금수급자

**3,742** g

#### 재직공무원 분포구조

- 2022년말 재직자 수는 **1,280,994명**이며, 남녀성비는 **51.3%(남)** 대 **48.7%(여)**로 나타남.
- 2022년 현재 재직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2.0세**이며, 평균 **15.6년**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기여금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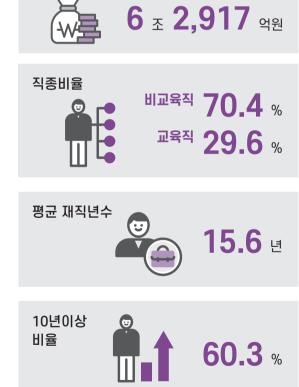
- 20년 및 10년이상 재직자는 각각 전체 재직자의 34.5% / 60.3%임.

#### **재직공무원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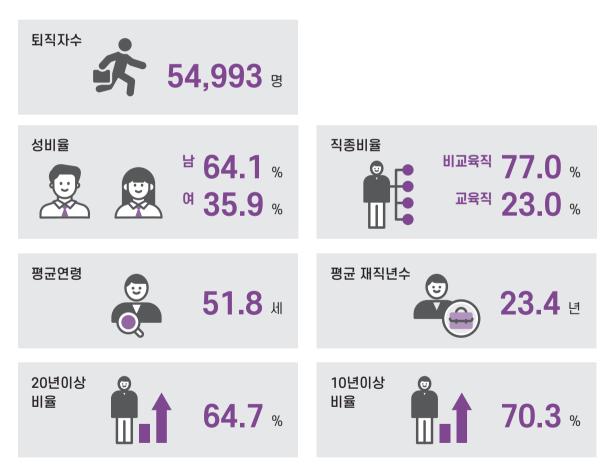




#### 퇴직공무원 분포구조

- 2022년 퇴직자 수는 **54,993명**이며, 퇴직자의 남녀성비는 **64.1%(남)** 대 **35.9%(여)**로 나타남.
- 2022년 퇴직자의 평균연령은 51.8세이며, 평균 23.4년 재직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남.
- 20년 및 10년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전체 퇴직자의 64.7% / 70.3%임.

#### **퇴직공무원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 퇴직공무원: '22.1.1.~'22.12.31. 중 퇴직(사망)으로 급여를 지급한 수임

#### 연금수급자 분포구조

-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약 63만명이며 재직자 대비 수급자 수인 부양률은 48.8%로 나타남.
- 퇴직연금수급자는 87.4%(546,010명)를 차지하며, 유족연금수급자는 나머지 12.6%(78,498)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연금수급자의 평균연령은 68세이며, 교육직은 전체 연금수급자의 31.1%정도를 차지하며 남녀성비는 68.3%(남) 대 31.7%(여)로 나타남.

#### 연금수급자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성비율





남 68.3 %

직종비율



비교육직 68.9 %

교육직 31.1 %

평균연령



**퇴직연금** 68 세

유족연금 74.9 세

#### 연금수급자의 급여 분포 (2022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유족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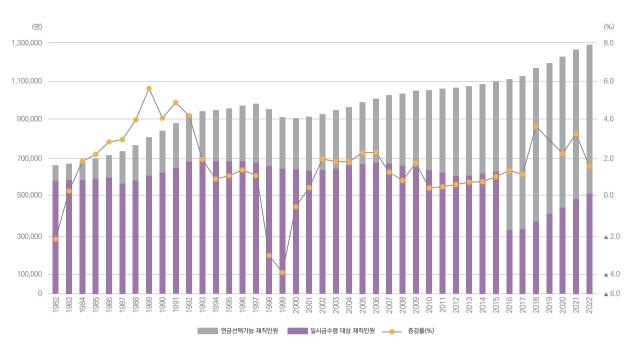
총 624,508 명

546,0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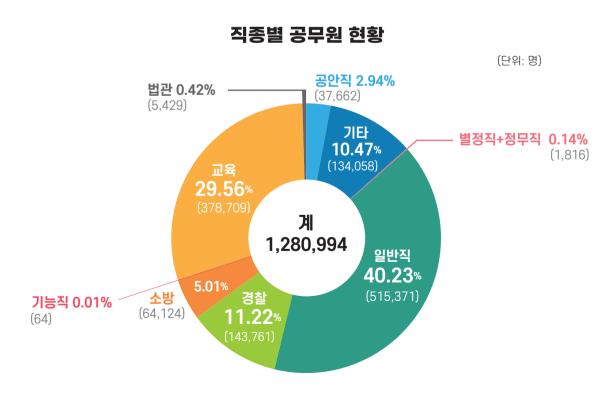
78,498명

\* 장해연금수급자(3,742명) 및 장해유족연금수급자(958명)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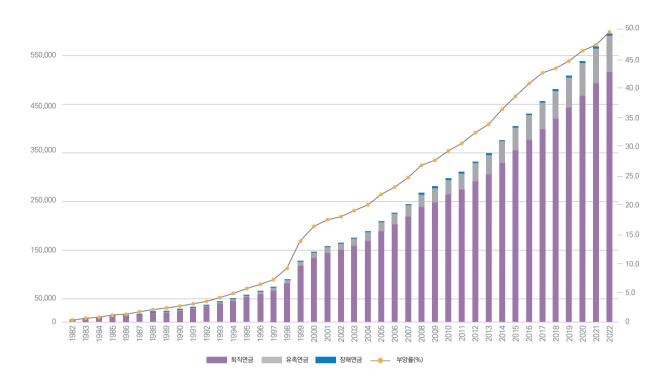
#### 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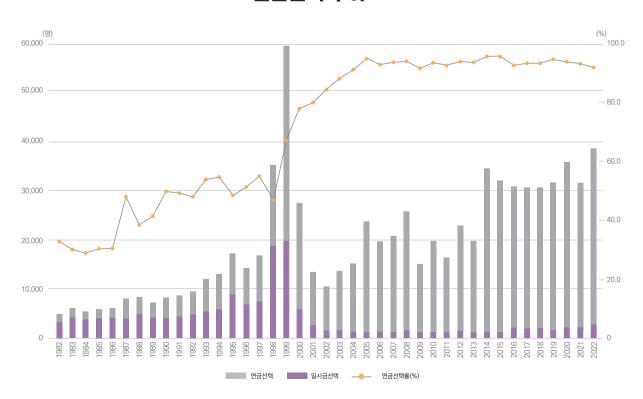
- 주) 1. 증감률(%) = 증감인원 ÷ 전년도 공무원수 × 100
  - 2. 2016년 연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금수급요건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자로 조정됨
    - 일시금수령 대상 재직인원 : 2015년까지는 재직기간 20년 미만, 2016년부터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재직인원임
    - 연금선택 가능 재직인원: 2015년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2016년부터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재직인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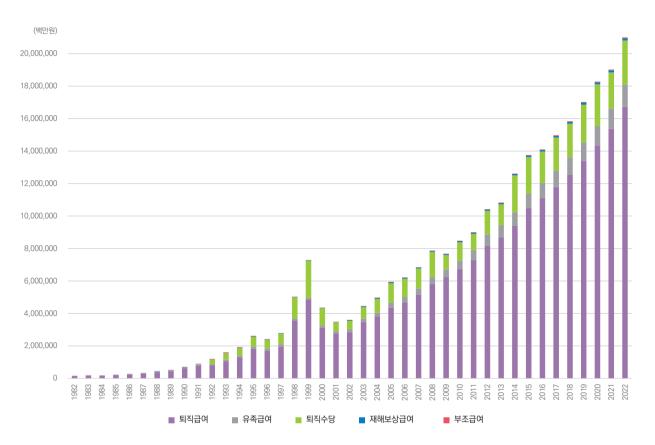
#### 연금수급자 추이



#### 연금선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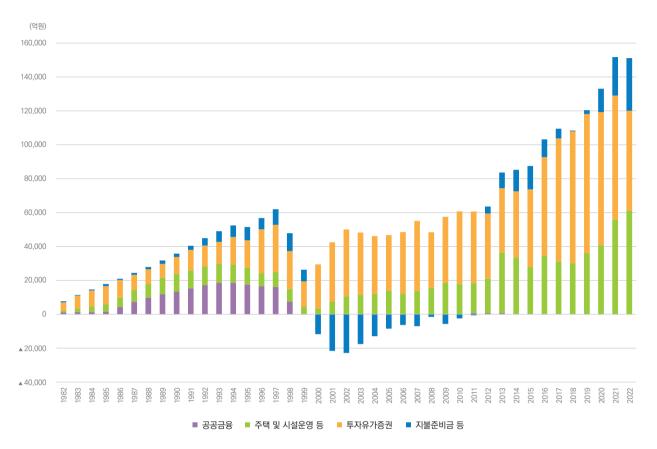


#### 급여종류별 지급 추이



주) 퇴직급여지급액에는 연금이체급여액 및 분할연금액 포함

#### 공무원연금기금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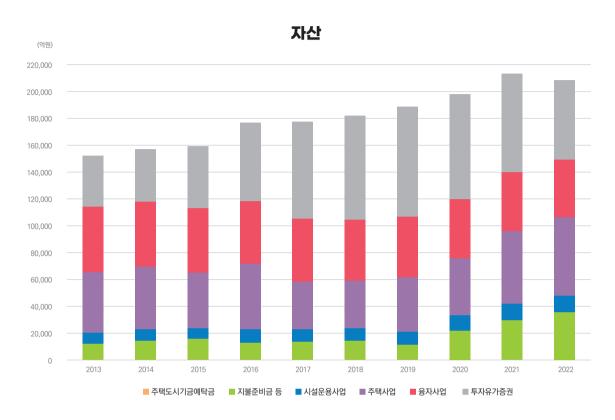
- 주) 1. 주택 및 시설운영 등에는 융자사업이 포함됨
  - 2. 2000년 이후 "지불준비금 등"란의 스는 재정자금차입금 및 부담금선수금 등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
  - 3. 2013년 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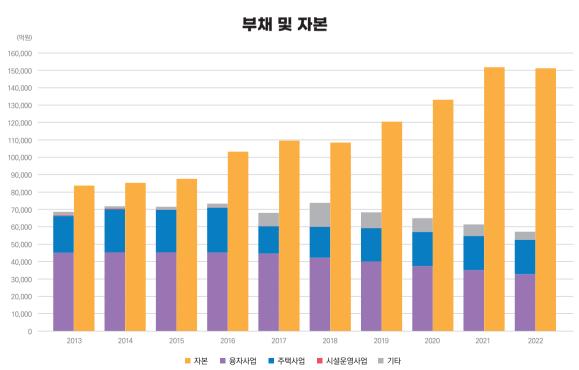
####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

(단위: 억원)

	구 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기금 탁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_	_
	투자유	가증권	38,037	38,938	45,896	58,182	72,563	77,833	82,100	78,566	73,155	58,977
		연금 대출	12,847	12,728	12,670	12,581	14,313	15,094	16,051	16,717	19,376	20,531
	융자 사업	학자금 대출	36,207	35,973	35,319	34,092	32,386	30,435	28,908	26,959	24,833	22,720
자 산		소계	49,054	48,701	47,989	46,673	46,699	45,529	44,959	43,676	44,209	43,251
	주 택	사 업	44,911	46,756	41,727	48,615	35,409	35,118	40,634	42,747	54,205	58,285
	시설운	영사업	8,432	8,612	7,909	10,312	9,480	9,454	9,776	11,280	12,267	12,243
	지불준	비금 등	11,737	13,985	15,468	12,637	13,306	14,104	11,201	21,702	29,262	35,587
	7	계	152,271	157,092	159,089	176,519	177,557	182,138	188,770	198,071	213,098	208,343
	융자 사업	학자금 대출	45,084	45,291	45,339	45,231	44,613	42,247	40,049	37,468	35,127	32,760
	주 택	사 업	21,173	24,868	24,376	25,765	15,731	17,745	19,254	19,548	19,559	19,782
부채	시설운	영사업	324	408	199	137	127	88	84	80	82	91
	7	타	2,020	1,253	1,633	2,175	7,580	13,679	8,954	7,888	6,578	4,534
	7	계	68,601	71,820	71,547	73,308	68,051	73,759	68,341	64,984	61,346	57,167
	자 본		83,670	85,272	87,542	103,211	109,506	108,379	120,429	133,087	151,752	151,176

- 주) 1. 자산의 투자유가증권에는 채권·예금, 주식, 신탁상품, SOC투자가 포함되어 있음
  - 2. 부채의 주택사업에는 주택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차입금이 포함되었음
  - 3. 부채의 기타는 재정자금차입금, 부담금선수금 등이 포함되었음
  - 4. 2013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





#### 2022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2022 GEPS ANNUAL REPORT

발행일2023년 09월 발행발행인공무원연금공단

\_

인쇄 온디자인(주)

연구-23-1-195



###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GEPS ANNUAL REPORT**